

#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5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### 3. 제안이유

평생교육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, 새로운 사업의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하여 충주학생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,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본청 직속기관으로 “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”을 설치하고, 관장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정함(안 제10절 신설)
-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충주학생회관을 폐지함(안 별표3)
-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를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-9번지로 함(안 제17조)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충주학생회관을 지역교육청 소관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,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**충주학생회관**은 평생교육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업의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**동 조례의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며**,
  -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 변경은 기존의 청주시 상당구 영동 87번지에서 운영하던 학생열람실, 평생학습실 등 업무의 주된 기능이 2010. 9. 1.자로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-9번지로 이전됨에 따라 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**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**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충주학생회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, 제천학생회관은 교육장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게 되는 필요성 또는 이유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.

## 관 계 법 령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10046호)
- 제32조 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